

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4호 2001. 10. 10)

총무위원회
2001. 10. 22

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10. 10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10. 10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10. 22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세무과장 김영태)

가. 제안이유

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이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민원증명발급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통하여 제증명서비스(7항)를 제공하고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함(안 제5조1항)
- (2)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수입증지를 표시함을 신설함(안 제5조2항)
- (3) 전자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3.0센티미터, 세로 3.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도안은 사천시를 상징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6조3항)
- (4)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 하여야 하며,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 수입증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7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- 이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용되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케 하고,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등 세부사용

기준과 보안관리 대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민원 발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수수료 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-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결

6. 소수의견 : 없음